현 행	개 정
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5 】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3. 25.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청소년육성법이 1992. 12. 31로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1.12.31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되어 1993.1.1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여러사항을 성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1. 제명의 변경(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2. 법령규정의 적용 변경 (제1조)
3. 위원회 구성의 인원 및 대상조정 (제2조제1항, 제3항)
4. 위원회 기능 및 임기 신설 (제3조, 제5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1조(목적)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하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제1항중 "15인이상 20인이내 위원으로"을 "위원15인 이내로"하며 동조 제2항중 "양주군수"를 "군수"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1인을 선출한다"를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제목 "(운영)"을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한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신설하며 동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조를 신설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목 "(실무위원회 설치)"를 "(위원장의 직무등)"으로 하고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 (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동조에 "위원회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동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회의 및 의사)"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 한다"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항및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목중 "(실무위원회 간사)"를 "(간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수당)중 "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을 "위원회 위원중"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중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을 "위원회의 의결을" 로 하며 "실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백석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출년월일 : 1993. 3. 8.

제 출 자 : 양주군수